

심사보고서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2
----------	----

2022. 10. 2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2일
- 라. 상정일자 : 제4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10월 13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450백만 원

- 출연목적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육성사업(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 공공 연구성과 확산,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지원 및 투자연계로 기업성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

- 출연내역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1식(450백만 원)

※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①-③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

- 기대효과

-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R&D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R&D - 사업화 - 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1,004백만 원

- 출연목적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기획·육성 기능 수행
- 남부권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신규공약사업)

- 출연내역

- R&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1식(804백만 원)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 (신규·공약) 1식(200백만 원)
- ※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②-③-1, ②-③-2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

- 기대효과

- 지역 R&D 거점기관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지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1)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대상기관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출연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²⁾에 따른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19년 8월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후 매년 R&D 기술사업화 지원,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등 특구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출연금 450백만 원은 2022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국비 대비 지방비 대응 비율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5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다.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출연계획안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³⁾에 따라 우수 R&D 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특히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출연은 신규사업으로 남부 3군 기업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혁신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의 총 소요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계획과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종합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대응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기관 운영비와 신규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증액사유와 신규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충청북도조례 제4481호, 2020. 12. 31., 전부개정] 제6조(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연구개발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맹은영	송인우	이예슬	8443

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 강병삼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 규모 : 11본부, 직원수 162명 ○ 주된사업 :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출자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45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충북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23.3.10. ~'24.3.9.	450	450	2,900	2,000	450	450	
※ 국비, 시군비는 재단으로 직접지원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월)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반드시 지원 필요 *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2281호('21.8.26.) /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 30%, 국고 대비 40%이상 매칭 ○ 기존 특구에서도 매년 육성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인견 (중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월)에 따라, 창업·기업성장 지원 및 특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 충북의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선도 혁신성장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실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드림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 관계법령 발체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우리 도는 지역 R&D 강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충북연구개발특구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음
-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여 6월에 충북을 포함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고시됨(현재 총 14개)
* (19)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함, 청주 등 6개 / (20) 서울(홍릉, 구미, 울주, 나주, 군산, 천안)산 등 6개 / (22) 인천, 춘천 등 2개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총 2.2km²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구성하여, 스마트IT부품·시스템 분야를 특화하여 육성 중임
-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주도형으로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 고밀도 R&D특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강소특구 육성사업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 총 사업비 대비 30%, 국고 대비 40%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2281호(21.8.26.)
- 기존 5개의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출연(30~45억원)해왔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자자체도 '20.~'21. 특구 육성사업을 위해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출연금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결산액	2022 예산액(최종) (C)	2023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요구액 (A)	실과검토액 (B)	증감 (B-A)	
충북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400	450	450	450	0	0

※ 관련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2281호(2021.8.26.)

- 총 사업비 대비 30%, 국고 대비 40% 이상

1-2 출연기관 현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설립근거	법률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전화번호 : 042-865-8800		
				홈페이지 : www.innopolis.or.kr		
주요연혁	'05. 9.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12. 7. : 특구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출범(명칭변경) '18. 2. : 준정부기관 지정 '19. 8. : 강소특구(안산,진주,창원,포항,창주,김해) 지정 '20. 8. : 강소특구(구미,울산,군산,나주,홍릉,천안) 지정 '22. 5. : 강소특구(인천서구, 강원춘천) 지정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정부출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원현황 (*22.07.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63명		152명	11명		
임원 (*22.07.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강OO	(前)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2021.03.05.~2024.03.04. (3년)		
	비상임이사	권O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당연직		
	비상임이사	임OO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당연직		
	비상임이사	남OO	계명대학교 교수	2020.07.03.~2022.07.02 (2년, 후임선정중)		
	비상임이사	이OO	前(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2020.07.03.~2022.07.02 (2년, 후임선정중)		
	비상임이사	김OO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이오분석표준센터 책임연구원	2020.07.03.~2022.07.02 (2년, 후임선정중)		
	비상임이사	김OO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2021.04.14.~2023.04.13. (2년)		
	비상임이사	이OO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	2021.04.14.~2023.04.13. (2년)		
주요기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특구법 제46조) - 특구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및 창업의 효율적 지원 -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협력 - 국내·외 투자 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 특구개발과 관련된 토지, 건물, 시설, 기자재의 취득, 공급 및 임대					
자본금 (단위: 백만원)	41,263 (*21.12월 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31,748(출연) (*21.12.31.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자산	73,323
	예산액	195,923	236,614	236,126	부채	16,746
	지자체 지원액 (출연금)	1,200	800	900	자본 (자산-부채)	56,577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2,720			213,221		△501

1-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연구개발지원팀		출연	45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 필요
- 지역 혁신 거점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 출연개요

- 사업명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기간 : 2023. 3. 10. ~ 2024. 3. 9.
- 출연액 : 450백만원(도비)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백만원)

구분 (기준보조율)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17,660	7,060	4,800	2,900	2,900	'22부터 지방비 매칭 상황 (국고 대비 20% → 총사업비 대비 30%/ 국고대비 40% 이상)
국비	13,860	5,860	4,000	2,000	2,000	
도비	1,900	600	400	450	450	
시군비	1,900	600	400	450	450	

- 주요내용 : R&D 기술사업화 지원,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등 특구 육성

□ 산출기초

- 강소형 기술 발굴·기획, 기술이전 사업화, 기업성장지원 사업 등 추진
- ※ 도비 출연금은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에 활용

□ 기대효과

-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R&D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
- R&D-사업화-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동력 부재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및 협약 의무 불이행에 따른 특구 해지 등 불이익 우려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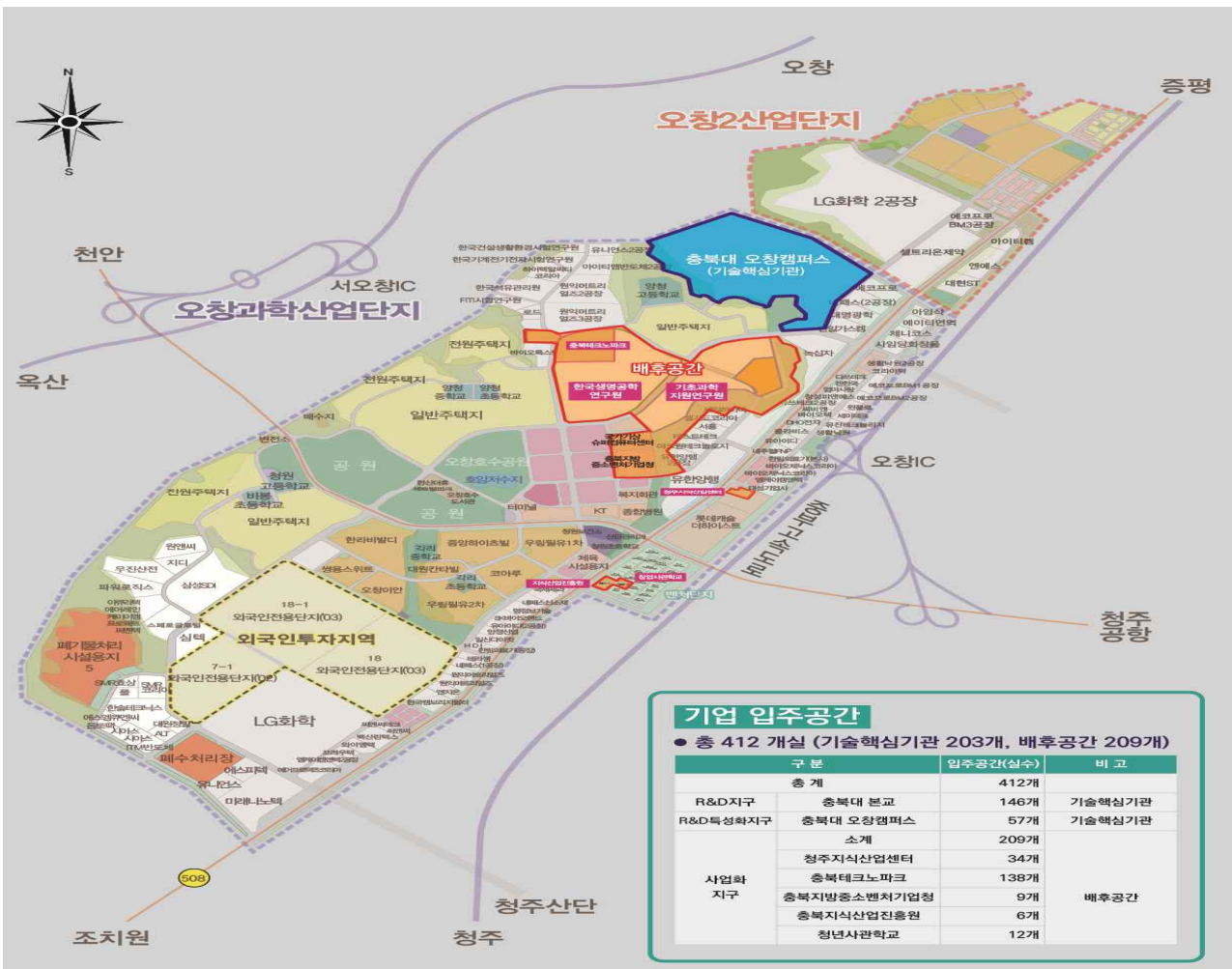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구성(안)

(단위: 백만원)

강소특구 육성사업(안)	수행주체	예산	세부내용
<input type="checkbox"/>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2,840	
① 기술발굴 및 연계		520	
①-1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기술핵심기관	500	· 사업화 우수기술 및 기술 수요기업 발굴 연구소기업 발굴 - 공동연구개발기관 1개사(300백만원) · 지역 내 유망기술 발굴, 기업추천 및 기술 연계 - 사업운영비(200백만원) ※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인력 등 운영비 포함
①-2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특구재단	20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 출자 예정인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② 기술이전사업화		800	
②-1 기술이전사업화(R&BD)	특구재단	800	지역 소재 기업 대상 R&BD과제 직접지원
③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530	
③-1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기술핵심기관	500	· 청주강소특구형 GAIN Project 프로그램 운영 - 아이템 검증, 공백기술 매칭 Track형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인력 등 운영비 포함
③-2 통합 엑셀러레이팅 지원	특구재단	30	공동 IR 데모데이 진행
④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990	
④-1 혁신네트워크 육성	기술핵심기관	150	·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6개 분과 협의체, Core-working 등 운영 ※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인력 등 운영비 포함
④-2 지역 특성화 육성	기술핵심기관	840 (지방비)	· 미래기술융합제품혁신 지원640 - (미래기술융합제품혁신 지원) 8건 x 60백만원 내외 - (사업운영비) 140백만원 ※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인력 등 운영비 포함 · 판로개척 역량강화 지원200 - (국내외 B2B 판로연계 지원) 10건 x 10백만원 - (해외 판로역량 강화 지원) 10건 x 10백만원
<input type="checkbox"/> 특구재단 간접비		60(지방비)	간접비
<input type="checkbox"/> 간접비 포함 예산 합계		2,900	합계

붙임2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위치도 및 배후공간



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소특구 사업 지방비(출연금) 매칭비율 상향 통보

1. 관련

- 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584('21.8.24.,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통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9조(협약)

2. 강소특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기획재정부 '21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8.24)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총사업비 대비 30%(국고 대비 40%) 이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소특구 육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

(단위 : 억원)

연도	특구 구분	국고	지방비	사업비 합계	
2022	'19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516
	'20년 지정	240 (특구당 40)	102 (특구당 17)	342 (특구당 57)	
2023	'19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348
	'20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2024	'19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348
	'20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2025	'19년 지정	-	-	-	174
	'20년 지정	120 (특구당 20)	54 (특구당 9)	174 (특구당 29)	

* '19년 지정 특구 6개, '20년 지정 특구 6개 기준
끝.

1-④ 관계법령 발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사업)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2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신성장동력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맹은영	김보영	안혜진	8414

기관명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김상규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 기관규모: 3본부 1센터 ○ 주된사업: 지역 과학기술 진흥,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기획·육성 								
출자·출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1,004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R&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23.1.~12.	795	804	1,104	-	804	300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신규공약)	'23.1.~12.	-	200	500	-	200	300	-	
※ 시군비는 재단으로 직접지원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기획·육성 기능 수행 ○ 남부권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공약) 								
근거법령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지도감독 부서인권 (중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국비 사업 다수 확보 등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석·박사급 R&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 지원 필요 - 특히,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3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설립, 남부 3군 기업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 관계법령 발체 								

2-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본 기관은 '03년 7월 설립 후, 지역 주도 과학기술 진흥 정책 수립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VR)·증강(AR) 현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기획·육성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 '20년 6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기존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고 조직개편을 감행하는 등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기관 혁신을 위해 노력
 - 또한, '22년 9월 현재 신규사업 확보실적(91,875백만원)은 전년도 실적(59,118백만원) 대비 55.4% 증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석·박사급 R&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 지속 지원 필요
 - 특히,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부권에 5대 혁신기관 및 대학*이 참여하는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설립, 남부 3군 기업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약 이행을 통한 도 균형발전을 위해 도비 출연 필요
- *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도립대·유원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결산액	2022 예산액(최종) (C)	2023 예산안			
			기관요구액 (A)	실과검토액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R&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565	795	804	804	0	9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신규·공약)	-	-	200	200	0	200

2-2 출연기관 현황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근거	법률 ① 민법 제32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조례 ③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43-210-0800			
				홈페이지: www.cbist.or.kr			
주요연혁	'03. 7.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등기 '04. 1. :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통합 '07.12. :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준공 '18.10. :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개소 '20. 6.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명칭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2.9.30. 기준)	계		정규직	정원 외			
	77명		60명	17명			
임원 (*22.9.30. 기준)	직책명	성명 (의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입기 (법령상 정해진 입기 기재)			
	이사장	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당연직			
	상임이사	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2022.1.1.~2024.12.31.(3년)			
	비상임이사	안○○	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민○○	前충청북도 행정국장	2021.7.26.~2023.7.25.(2년)			
	비상임이사	김○○	前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2021.7.26.~2023.7.25.(2년)			
	비상임이사	이○○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2021.10.8.~2023.10.7.(2년)			
	비상임이사	연○○	충북일보 대표이사	2021.10.8.~2023.10.7.(2년)			
	비상임이사	이○○	(주)유진테크놀로지 대표	2021.10.8.~2023.10.7.(2년)			
	비상임이사	정○○	(주)브이알북 대표	2021.10.8.~2023.10.7.(2년)			
주요기능	- 지역 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VR)·증강(AR) 현실, 블록체인 산업육성 및 활성화 -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 조사, 성과분석, 평가 등 정책연구 - 첨단산업 기술 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뉴 콘텐츠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 (단위: 백만원)	50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5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	18,011
	예산액	33,760	36,534	71,428		부채	5,480
	지자체 지원액 (출연금)	200 (도)	565 (도)	795 (도)	*'21.12.31. 기준	자본 (자산-부채)	12,531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 '21.12.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3,765			33,508		257	

②-③-1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R&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출연	804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석·박사급 우수 R&D 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으로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기획·육성을 위한 도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수행

□ 출연개요

- 사업명 : R&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 기간 : 2023. 1. ~ 12.
- 출연액 : 804백만원
- 주요내용 :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기획을 위한 R&D 인력 지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부가세 환급금 충당

□ 산출기초

- 석·박사급 R&D 인력(7명) 인건비 지원(515백만원)
-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부가세 환급금 충당(89백만원)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200백만원) * '22. 3월 개소, 운영 중(충주)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자	-	-	-	-	-	-
출연금	2,558	-	394	565	795	804
인건비	1,555	-	80	465	495	515
운영비	533	-	244	100	100	89
시설비	70	-	70	-	-	-
북부센터	400	-	-	-	200	200

□ 기대효과

- 지역 R&D 거점기관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지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력 확보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기원의 안정적인 재단운영 어려움 발생으로 R&D전담기관의 역할 수행에 한계, 과학기술과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 곤란

②-③-2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출연	20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산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도내 혁신기관* 청주권에 집중
* TP, 과학기술혁신원, 충북연구원, 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남부권 산업체와 연계성·접근성이 떨어지고, 산업생태계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 소외감 증대 * 북부권은 '22. 3월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 남부권 기업지원 및 신사업 발굴로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 필요
* 공약사항 : 도 공공기관 분산배치(94-5.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

□ 출연개요

- 사업명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
- 기간 : 2023. 1. ~ 12.
- 출연액 : 200백만원
- 주요내용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산출기초

- 센터 설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도비 부담금 일부 지원
* 소요예산 5억(도 2, 보은 1, 옥천 1, 영동 1) / 설립계획 별첨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자	-	-	-	-	-	-
출연금	200	-	-	-	-	200

□ 기대효과

-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부권 기업지원 강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기원의 재정 여건상 남부권 신산업 발굴·육성 등 역할 수행 및 공약 이행에 어려움 발생, 지역 산업 균형발전 대응 곤란

붙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계획 (안)

< TP + 과기원 + 연구원 + 기업진흥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 대학 >

남부 3군 기업지원 및 신산업 발육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 추진

* 공약사항 : 도 공공기관 분산배치(94-5.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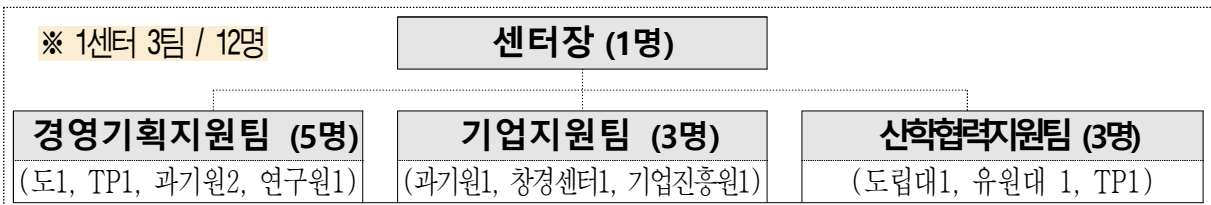
** 북부권의 경우 '22. 3월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충주)

1] 설립개요

- 운영시기 : '23. 1월~
- 설립형태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산하조직
- 센터규모 : 3팀(경영기획지원팀·기업지원팀·산학협력지원팀) / 12명 정도
- 소요예산 : 5억원 정도(도 2, 보은 1, 옥천 1, 영동 1)
- 참여기관 : 충북 5개 혁신기관* 및 남부권 2개 대학**
 - * TP, 과학기술혁신원, 충북연구원, 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 도립대·유원대

2] 조직구성 및 인력규모

○ 조직구성



○ 기관별 지원인력 규모(안)

기 관 명		인력지원 규모	배 치
계		12명	
충청북도		1명	경영기획 1(행정 5급)
혁 신 기 관	과학기술혁신원	4명	센터장 1, 경영기획 2, 기업지원 1
	TP	2명	경영기획 1, 산학협력 1
	충북연구원	1명	경영기획 1
	기업진흥원	1명	기업지원 1
	창조경제혁신센터	1명	기업지원 1
	남부권 대학(유원대·도립대)	2명	산학협력 2

○ 주요업무

경영기획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 신규사업 및 대형 국책사업 기획·발굴, 정부 공모사업 대응 ○ 남부권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남부권 혁신자원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공유·관리
기업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판로 지원 ○ 중소기업 애로 지원 및 정보제공 (금융·경영·인력 등) ○ 비즈니스 중개 (제품개발·디자인·마케팅·수출 등) ○ 기업 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연계 지원 ○ 장비활용 연계·지원 (시생산·인증·신뢰성평가·시험분석 등) ○ 창업(스타트업) 지원사업 홍보, 서비스 제공·연계
산학협력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권 산학연 협력증진 협의체 구성·운영 ○ 산학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 산학연구사업 관리

③ 예산지원

○ 재원분담(안)

(단위 : 백만원)

계	도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교부받는 기관
500 (100%)	200 (40%)	100 (20%)	100 (20%)	100 (20%)	▶ 과학기술혁신원

④ 추진경과

-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부단체장 간담회(1차) : '22.05.27.
-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설립 가능 장소 수요조사 : '22.07.
- 5개 혁신기관장 간담회(TP·과기원·연구원·기업진흥원·창경센터) : '22.07.28.
- 道 관계부서 협의회의(정책기획관·경제기업과·신성장동력과) : '22.08.03.
-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부단체장 간담회(2차) : '22.08.29.
- 남부권 대학(도립대·유원대) 산학협력단 협의회의 : '22.09.16.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 : '22.09.30.

⑤ 향후계획

- 도, 남부 3군, 혁신기관 및 대학 MOU 체결 : '22.10.
- 센터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 '22.10.~12.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 '23.01.

②-④ 관계법령 발취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31.)

제6조(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① 충청북도지사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2.6.29.)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2.10.)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